

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

규정 ·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· 현행 규정

개정 2021. 1. 22. · 시행 2021. 1. 18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2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3:15:55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①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

② 센터는 본교 학생, 교직원,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

제2조(소재)

센터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.〈개정 2021-01-22〉

제3조(사업)

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

1.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
2.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
3.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
4. (예비)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
5.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
6.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〈개정 2021-01-22〉

제4조(조직구성)

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〈개정 2021-01-22〉

② 〈삭제 2021-01-22〉

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

제5조(센터장)

① 스타트업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.

③ 〈삭제 2021-01-22〉

〈전면개정 2021-01-22〉

제6조

삭제

제7조(재정 및 회계)

지원단의 회계는 본교 교비회계 관리규정을 따른다.

제8조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1-01-22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